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전 기 · 전 자 제 품 및 자 동 차 의
자 원 순 환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업정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 지연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2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부과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태양광 패널을 현행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의 예외로서 제품별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양을 매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하고,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회수 부과금 산출기준이 되는 재활용 단위비용 및 회수 단위비용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에게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부여하고 온도교환기기군, 디스플레이기기군 등의 제품군별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재활용의무량을 산출하는 제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2. 4. ~ 3. 16., 7. 7. ~ 8. 16., 00. 0.,
~ 00.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3항 중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 사용량”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각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7까지로 하고,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전기·전자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이하 “특정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에 특정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에 특정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의6(중전의 제15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5조의4”를 “제15조의5”로, “50억”을 “50억원”으로 한다.

제15조의7(중전의 제15조의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를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 및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 또는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을 “재활용의무량 또는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않은”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출고량을 제출하지 아니한”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

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말한다)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3조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제15호의3부터 제15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제품 출고량

제33조제15호의3(종전의 제15호의2)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의4(종전의 제15호의3)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

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제8호의3 및 제8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년도에 특정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 제34조제8호의3(중전의 제8호의2)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4(중전의 제8호의3)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5호의2 및 제15호의3을 각각 제15호의3 및 제15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5호의3(중전의 제15호의2) 중 “제15조의5”를 “제15조의6”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의4(중전의 제15호의3) 중 “제15조의6제2항”을 “제15조의7제2항”으로 한다.

15의2.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년도에 특정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의 접수·확인

별표 3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제품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은 해당 제품에 한하여 인정한다.

별표 5 라목 다음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태양광 패널	kg당 727원	kg당 94원
-----------	----------	---------

별표 6의 제목 중 “재활용의무량”을 “재활용의무량,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으로 하고, 같은 표의 재활용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란 다음에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미이행 가산금액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재활용부과금
특정제품	기준비용×특정	기준비용×특정	기준비용×특정	기준비용×특정
재활용	제품 재활용의	제품 재활용의	제품 재활용의	제품 재활용의
의무량	무량 중 재활용	무량 중 재활용	무량 중 재활용	무량 중 재활용
미이행	되지 않은 수량	되지 않은 수량	되지 않은 수량	되지 않은 수량
가산금액	×15/100	×20/100	×25/100	×30/100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특정제품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와 공제조합은 2023년도의 특정제품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16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정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1. 별표 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제품군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times$ 인구수 $\times$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times$ 의무이행 전년도에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별표 3 제5호의 제품군은 제외한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2. 별표 3 제5호의 제품군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times$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times$ 의무이행 전년도에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특정제품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비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매출액의 2/100	매출액의 3/100	매출액의 5/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 기준) ①·② (생 락)	제15조의2(재활용의무량의 산출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u>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합성수지류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u>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 이행 전년도에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③ ----- ----- ----- <u>폐합성수지류를 재활용한 원료</u> ----- ----- ----- ----- ----- ----- -----.
④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에 전기·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에 제품군별 <u>재활용 원료 사용량(전기·전자제품의 제조에 폐전기·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만 해당한다)</u> 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u>제출하여야</u> 한	④ ----- ----- ----- ----- ---- <u>폐합성수지류 재활용원료 사용량</u> ----- ----- ----- ----- ----- ----- ----- <u>제출해야</u> -----.

다.

⑤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의3(재활용 가치가 높거나

재활용이 특별히 필요한 전기·

전자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하

는 전기·전자제품”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이하 “특

정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

항에 따라 특정제품의 연간 출

고량 중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제품 재활용의무

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

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③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특정제품 재활용의무

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

의 특정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

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특정제품 재활

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

년도의 특정제품 총 출고량에

제15조의3·제15조의4 (생략)

제15조의5(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4에 따른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1.·2. (생략)

제15조의6(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제품군별 회수의무량 반영계수[환경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제15조의4·제15조의5 (현행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와 같음)

제15조의6(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 제15조의5 -----

-- 50억원 -----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7(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부장관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법 제16조의4 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의 역할관계, 시장점유율 및 판매량과 매입량 차이 등을 고려하여 0.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계수를 말한다] × 의 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총 매입량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제품군별 매입량 비율

②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

----- 제출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재활용부과금의 산정·부과 등) ① -----
재활용의무량 및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 않

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

은 -----

-----.

② ----- 재활용의무량 또는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

--.

③ -----

----- 재활용의무량 또는 특정제품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않은 -----

고지해야 -----.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

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
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
여 출고량·매입량·판매량, 재
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별 출고
량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생략)

3.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
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생략)

② (생략)

<신설>

-----.

1. -----

----- 출고
량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
른 특정제품 출고량 등의 자
료를 제출하지 않은 -----

2. (현행과 같음)

3. -----
제15조의7제2항-----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
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

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

<신 설>

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 4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말한다)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1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

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u>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u> ③ <u>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u> ④ <u>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u>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고와 검사 등) ----- ----- -----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설></u>	<u>15의2.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제품 출고량</u>
<u>15의2.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u>	<u>15의3. 제15조의6</u> ----- -----
· 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	
· 전자제품 매출액	
<u>15의3.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u>	<u>15의4. 제15조의7제2항</u> ----- -----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 -----
<u>15의4.</u> (생략)	<u>15의5.</u> (현행 제15호의4와 같음)
16. (생략)	16. (현행과 같음)
제34조(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4조(운영관리 정보)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설></u>	<u>8의2.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년도</u> <u>의 특정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u>
<u>8의2.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출액</u>	<u>8의3. 제15조의6</u> ----- ----- -----
<u>8의3.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u>	<u>8의4. 제15조의7제2항</u> ----- ----- ----- -----
9. (생략)	9. (현행과 같음)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략)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 -----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5의2.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 확인 15의3. 제15조의6제2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확인 16. ~ 24. (생 략)	15의2.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전년도에 특정제품 출고량 등 의 자료의 접수·확인 15의3. 제15조의6----- ----- ----- 15의4. 제15조의7제2항----- ----- ----- 16. ~ 2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연 락 처	(044) 201 - 7384